

Press Release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 17.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과 장 : 류 이 현
사무관 : 신 지 영
전 화 : 500-1726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5)

이 자료는 2011년 1월 1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농업인 호응 기대 이상

- 가입자 120명에게 1월분 연금 최초지급 -

-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지연금 가입자 120명에 대해 1월분 연금 1억2천만원을 지난 15일 최초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농지연금에 가입한 120명의 고령농업인이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평균 100만8천원이며, 가장 많은 금액이 304만8천원, 가장 적은 금액은 4만2천원이다.
-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90명(전체 가입자의 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농지연금은 연금을 평생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만 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가 67명(55.8%)으로 평균 96만원을, 기간형가입자가 53명(44.2%)으로 평균 107만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신행 가입자가 많은 것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며, 기간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대여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종신행보다 높은 연금액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 농지연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여 1월 3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았으며, 8일 만인 12일까지 23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가입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연금지급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1월분 연금은 12일까지 약정을 체결한 120명에게 지급됐다.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신의 농지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조사(2008년) 결과 65세 이상 농가 중 참여의향이 있는 농가가 30.9%로 나타났으며, 농지연금 인지도 조사(2010년) 결과 47.4%가 농지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인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농지연금 가입자 현황

(2011. 1. 3 ~ 1. 12, 8일간)

① 가입자 개요

가 입 인 원 (명)			연 금 액 (천원)			연 령 (세)		
계	종신형	기간형	계	종신형	기간형	계	종신형	기간형
120	67	53	1,008	959	1,070	75	76	75

※ 1월분 월지급금 총액: 121백만원 (종신형 64백만원, 기간형 57백만원)

② 연금 가입형태별

구 분	계	종 신 형	기 간 형			
			계	5년형	10년형	15년형
인 원	120	67	53	19	24	10
비 율	100%	56%	44%	16%	20%	8%

③ 가입자 연령별

구 분	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세 이상
인 원	120	9	46	44	17	3	1
비 율	100%	8%	38%	37%	14%	2%	1%

④ 연금액 규모별

구 분	계	50만원 미만	50~100	100~150	150~200	200~250	250만원 이상
인 원	120	42	37	13	9	4	15
비 율	100%	35%	31%	11%	7%	3%	13%

농지연금 가입자 사례

① “재산보다 부모가 잘 사는 모습 남겨주고 싶어”

- 김화숙씨(66세, 경기 포천)와 배우자 김대수씨(69세)는 '11년 1월 3일 농지연금에 최초로 가입하여 뜻하지 않게 역사의 한 현장에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담보농지면적 3,596㎡, 월지급금 508,720원)
- 김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부모가 노후에 잘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고 싶다고 말하며, 1남 1녀의 자녀들도 기뻐했다고 전했다.
- 또한 김씨는 농지연금 최초 가입자답게 홍보대사로 나서겠으며, 모두의 바람대로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② “내가 가도 부인이 연금 받으니 안심”

- ○○○씨(77세)는 지난 7일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담보농지면적 13,676㎡, 월지급금 1,778,760원)
- '10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지사에 방문하는 등 농지연금 시행을 기다려왔던 ○씨는 이제 농민도 농지를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기뻐했다.
- ○씨는 농지연금 가입 후 부인(80세)에게 “이제 내가 가도 당신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서 좋다”고 말했으며, 부인은 함께 편하게 오래 살자며 노부부의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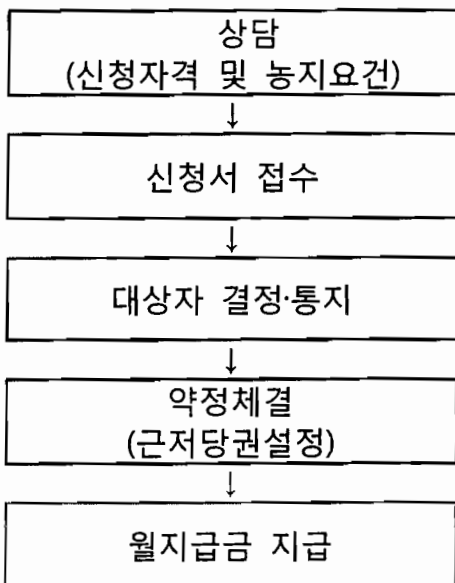
Q & A

1. 농지연금 가입요건과 절차는?

- 농지연금 신청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 신청자 명의의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신청서접수

- 신청장소(접수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전화상담 : 1577-7770
- 홈페이지 : www.fplove.or.kr

2.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수급자 개개인의 여명을 예측하여, 수급자가 납입하는 위험부담비용 총액과 약정해지시 회수가 불가능한 농지연금채권 총액이 일치하도록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 즉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과 담보농지 평가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며, 월지급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클수록 많아집니다.
- 예를 들어, 담보농지 평가가격별 가입연령별 월지급금은 다음과 같으며,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월지급금의 상한액을 3백만원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종신형 월지급금표>

(단위 : 천원)

농지가격 연령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65세	327	655	982	1,310	1,637	1,965
70세	388	776	1,164	1,552	1,941	2,329
75세	468	936	1,404	1,873	2,341	2,809
80세	578	1,156	1,734	2,312	2,890	
85세	736	1,472	2,208	2,944		
90세	928	1,856	2,785			

- 대출이자율 4%, 기대이율 5.11%, 농지가격상승률 2.85%, 2008년 여자생명표 적용

3.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 농지연금의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생존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 기간형은 지급기간 5년형과 10년형, 15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지급방식은 수급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 가입자의 사망시 농지소유권이전 및 농지연금채무인수 등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수급권이 이전되면 배우자에게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기간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 약정 체결시 약정한 지급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승계받을 경우는 남은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지급금 지급방식>

지급방식	종신형	기간형		
		5년형	10년형	15년형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90세 이하	만 65세 이상 80세 이하	만 65세 이상 72세 이하

※ 기간형은 해당 기간 동안에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채권은 약정해지 시 회수

4. 농지연금채무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 농지연금채무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약정해지 사유발생시 상환합니다.
 - 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할 수 있으며, 상속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채무를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농지연금채무 상환시 농지처분가액이 농지연금채무보다 적더라도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손실액은 농지관리기금에서 결손처리 합니다.
 - 예를 들어, 사망시 농지연금채무액이 3억원이고 농지처분가액이 2억8천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천만원은 별도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농가인구의 고령화현황과 연금수급상황은?

- 우리나라 농가인구 3,117천명 중 65세이상 인구는 1,067천명으로 농가고령화율은 34.2%이며, 전국인구의 고령화율 10.6%의 3배 이상입니다.
- 전체 농가수는 1195천호이며, 이 중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는 594천호로(49.7%)에 달합니다.
- 농가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 중 연금 미수급 농가는 272천호로 45.7%에 달합니다.

< 농가 고령화 현황 >

(단위 : 천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대비	
						증 감	증감률
농 가 인 구	3,434	3,304	3,274	3,187	3,117	-70	-2.2%p
65세이상	999	1,018	1,052	1,060	1,067	8	0.7%p
농가고령화율	29.1%	30.8%	32.1%	33.3%	34.2%	0.9%p	
남 자	27.3%	29.0%	30.1%	31.2%	32.2%	1.0%p	
여 자	30.8%	32.5%	34.0%	35.2%	36.2%	1.0%p	
전국고령화율	9.1%	9.5%	9.9%	10.3%	10.6%	0.3%p	

* '09 통계청

<65세 이상 농가의 연금수급 현황>

구분	전체	연금 미수급	연금수급 농가수
65세 이상 농가수(호)	594,351	271,534	322,817
비율(%)	100	45.7	44.3

* 4대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및 금융권 연금보험 등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연금
 ** '09 통계청